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4-016-234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4. 9. 25.

주 문

-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 가. 피심인은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삭제절차·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처리 과정에서 최초 수집 목적(서비스 제공)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보관할 때 보호법 제2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
 - 다. 피심인은 가.~나.의 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가. 피심인은 등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할 것
 -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의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72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이하 ' ')의 발행·판매 및 수단 개발·보급 등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법」1)(이하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설립일	대표자 성명	주요 사업	자본금	종업원 수(명)

¹⁾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 체 매 출 액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심인이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2) 및 언론보도3) 등에 따라 피심인의 생체정보 수집·처리 관련 사실관계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피심인의 업무 형태

피심인은 기기(, 이하 '기기')를 통해 수집·생성된 ' 원본 이미지' 및 ' ', (가상자산 지갑 앱, 이하 ' 앱') 설치 시 생성되는 ' ID4)'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심인은 2023년 7월 24일 를 정식 발행하였고, 수집 논란 및 기기 오류 등으로 2024년 2월 29일 국내 수집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한국어 처리방침 마련 및 () 조사에 따른 조치 사항5)을 반영하여 2024년 4월 30일 국내 수집을 재개하였다.

피심인은 기기를 통해 원본 이미지를 촬영이하여 를 생성하고, 시스템'에 전송하여 기존 와의 유사도 확인을 통해 이를 ' ID의 기인증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신규 생성 여부가 확인된 및 해당 이용자의 ID⁷)를 의 별도 데이터베이스의 각각 보관하였다.

피심인의 국내 생체정보 수집과 관련한 '기기 운용'은 개 업체8)가 곳에서 수행하였으며, 현장에서 이용자 연령확인, 원본 이미지 및 수집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나, 보호법 위반 관련 사실관계

1) 생체정보 수집·이용 동의 관련

피심인은 국내 이용자에게 등을 수집 처리 하면서 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적 고지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이를 '보호법상 익명정보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현장9)에서 기기를 통해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사람임을 확인하고 를 산출한다고 고지할 뿐 생체정보 동의서 전문을 확인하는 등 법정 고지사항에 대해 알리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히 담당 직원은 를 익명정보로 설명10)하면서 '생체정보 처리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

참고로 피심인은 이용자의 '데이터 수탁(선택사항)' 별도 동의 시, 원본 이미지도 수집11)하였으나, 2024년 4월 30일 국내 수집을 재개하면서 해당 기능은 비활성화하였다.

⁶⁾ 저장에 동의하지 않은 원본 이미지는 기기 내에서 삭제

⁷⁾ 해당 ID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키는 이용자 기기에 저장

⁸⁾ 업체명(계약일): (' . . .), (' . . .), (' . . .), (' . . .), (' . . .)

¹⁰⁾ 피심인이 제출한 직원 교육자료(현장 매뉴얼)에도 ' 익명데이터로 간주된다'라고 기재

¹¹⁾ 국내 이용자 총 명의 원본 이미지를 수집하였으나. '24. 3. 22. 기준 전부 삭제하였다고 소명

	<	수집 등	동의 >	<	수집 동의 >	< 개인정보	삭제 요청 >
1	2) 개인정 피심인은 ' 마련하지 않?				·개 키' 등의 '	'계정 데이터'	삭제12) 절차를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피심인이 수집한 생체정보(등) 및 ID 관련 데이터는
()의 (이하'') 및 ()의
에 이전(처리위탁·보관)되고 있으나, 피심인이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12) 2024}년 4월 30일 국내 수집을 재개하면서 삭제 기능 도입(재가입 방지 관련 6개월 뒤 파기)

	<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
i)	수집 과정(정보주체 기준)
ii)	이전 과정(개인정보처리자 기준)

- Ⅲ. 관련 법규 및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3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허용하는 경우(제2호)" 민감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¹³⁾(이하 '시행령') 제18조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민감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3호)"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제1호는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호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¹⁴)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가목)",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나목)"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8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¹³⁾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14)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면서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은 사실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피심인이 이용자의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면서 의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1항위반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은 사실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1항]

피심인은 () 및 ()에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및 보관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 이전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을 공개하는 등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행위는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삭제·처리정지 등)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4항]

피심인이 기기를 통해 수집한 에 대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삭제·처리정지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8조제4항위반에 해당한다.

Ⅳ.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

 피심인은
 가
 (
),

 (
)
 등의 비식별 처리를 거친 보호법 상의

 '익명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피심인이 를 산출·수집하는 목적은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중복 가입(산출된 의 기존재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 하여,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생성된 생체인식정보(민감정보)가 아닌 '일반 생체정보'로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설령 를 민감정보로 보더라도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생성·수집한 는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기인증 여부 검증)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 (알고리즘으로 변환)을 통해 생성한 보호법상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 정의에 그대로 부합하며,

피심인은 가 원본 이미지로의 복원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보호법 상 생체인식정보의 개인(민감)정보 여부는 원본 정보로의 복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유일성을 표현하는지 여부 및 이를 통해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는 기술적으로 특정 개인의 유일성을 표현¹⁵⁾하고, 피심인은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와 이용자의 ID가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가 소유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

¹⁵⁾

이를 통해 동일한 과 다른 을 확실하게 구분 가능(피심인 제출자료)

< 참고: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

- 는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입력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인식장치 등을 통해 수집되는 생체인식 원본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의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하고 있으므로 생체인식 특징정보에 해당함이 명백
-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가입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은 **특정 개인을 인증하기 위한 목적** 으로 '를 처리하는 것(인증)으로 판단되고, 내부적으로 이용자 ID와도 연결되어 처리되고 있음
- 통상 생체인식정보는 원본 정보를 코드화한 것으로 대부분 원본 정보로 복원이 불가능하며, 원본정보로의 복원 여부 및 다른 정보와의 연계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고유성이 있는 정보로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특성이 있음
- ※ 의 경우 차량등록번호와 달리 다른 정보를 매개로 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 정보주체의 고유성이 두드러짐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9월)

- 생체인식정보 :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
-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 : 홍채 등에서 추출한 특징점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임을 확인
- i) **인증**: 이용 권한이 있는 **특정 개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생체정보를 기기 등에 저장된 정보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 확인
 - ※ (예시) 지문을 입력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하는 출입통제 시스템
- ii) 식별 : 개인의 생체정보를 DB에 저장된 다수의 생체정보와 대조하여 여러 사람 중 특정 개인을 구분하여 확인
 - ※ (예시) 기 등록된 여러 가족 구성원의 음성 중 지금 말하는 사람을 확인하여 대답하는 AI 스피커

또한, 피심인 스스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 거주지 법률에 따라 가 개인정보(또는 생체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 점, 형식적으로나마 (생체인식정보 동의)를 받으려 했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는 생체인식정보(민감정보)임이 명확하다.

아울러 피심인이 , 등 다양한 비식별화와 원본 파기 등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시 당연히 요구되는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에 해당하며, 민감정보로서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과는 관련이 없다.

특히, 유출사고 등 발생 시 변경이 불가능해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생체인식정보를 단순히 영문 ' '동의란에 기입토록 한 행위를 두고 국내 정보주체의 유효한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2. 국외 이전의 적법 근거

피심인은 국외 사업자로서 를 국외에서 직접 수집하므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하고 주장하며, 설령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해당하더라도 현재는 법정 고지사항을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등)를 적법하게 국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심인의 사업 구조상 의 생성·인증 업무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해당 업무는 피심인의 국가 서버에서 진행되어야하므로 피심인이 국외 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국외 이전이 예상 가능한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국외 사업자(, 등)에게 처리위탁 및 보관하고 있으며, 이는 보호법상 명백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해당한다.

특히, 위원회 조사 시점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보호법상 고지사항이 전부 누락되어 있었으며,

< 피심인 Privacy Notice('23.6.16.~'24.3.21., 번역) >	

일부 개선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

'로, (이전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기간을 각각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방침에 정의된 목적달성 시까지' 등으로 기재하는 등 고지

내용이 미흡한바, 현재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국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3. 과징금 산정 관련

피심인은 자신이 영리 목적이 없고 위반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으며,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되는 2개의 위반행위¹⁶)는 '처리'라는 하나의행위에 해당하므로「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¹⁷」(이하'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2항¹⁸)에 따라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과징금 중 더높은 금액의 과징금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매출은 자산 성격인 를 에 따라 (,)에게 제공하는 과정¹⁹) 등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 외매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관상 피심인의 매출은 존재하나, 법인에 등을 판매한 매출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의 생성·수집과는 별개의 성격이며, 이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시행령 §60의2②, 과징금 부과기준 §6③ 제2호)' 및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보호법 §64의2①)'에 해당20)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¹⁶⁾ 적법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행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행위

¹⁷⁾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

¹⁸⁾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²⁰⁾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해 '기부금 수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의 종류·범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액과징금 부과('10.5.4.)

< 참고 : 피심인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

- 에서도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 간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현재 단계에서 ()은 으로서의 구매 능력이 없으므로, (구매 능력이 없는) **판매 자체만으로 매출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자산 성격의 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투자금의 성격으로서 통상의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움
- 설령 인증을 통한 가입자의 증가가 의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하더라도 는 계약된 금액에 따라 판매되었으므로, 판매 수익에는 영향이 없어 처리와 관련한 매출액으로 볼 수 없음

한편, 보호법 제23조의 경우 민감정보를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보호하고자하는 것이 목적이고, 제28조의8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강화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목적인바, 피심인은 보호법익을 달리 하는 두 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적법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행위와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행위가 '처리'라는 하나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V. 처분 및 결정

1. 개선권고

피심인의 국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생체인식정보(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 가. 피심인은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삭제절차·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처리 과정에서 최초 수집 목적(서비스 제공)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보관할 때 보호법 제2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

다. 피심인은 가., 나.의 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2.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가. 피심인은 등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할 것
- 나. 피심인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의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3. 과징금 부과

< 민감정보를 처리하면서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은 사실 >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3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과징금 산정 기준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 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 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관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유출등과 안전성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 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은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3항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제2호)"에는 영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피심인이 를 현금화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3항제2조에 따라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고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달러)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①전체 매출액			
②관련 없는 매출액			
①에서 ②를 제외한 매출액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에 따른 기준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을 초과('23. 4. 21. ~) 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가산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3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2)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 내역>

①기준금액	②1 ^大	조정	③2ᡮ	조정	④최종과징금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정액과징금) •위반점수 2.2 적용 (매우 중대한 위반*)	(* '23. 4. 21.(2년 25% 가중 원) 국내 정보주체 집일) ~	•조사협력으 (로 30% 감경 원)	원
⇒ 원	⇒	원	⇒	원	

- * ①(고의·과실:중)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적 목적(, 기기 성능향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외형상 동의절차(별도 동의서, 체크박스 등)는 존재하였으나, ▲ 영문 처리방침 및 생체정보 수집동의서만을 활용하여 국내 정보주체가 내용을 쉽게 읽고이해할 수 없도록 동의를 받는 등 중과실이 있음
 - ②(부당성:중) ▲ 를 이용자 중복가입 방지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하나, ▲생체 인식정보 처리 관련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용자에게 를 익명정보라고 안내하며, 처리방침에도 를 익명정보로 기재하는 등 부당성 현저
 - ③(개인정보 유형:상) ▲민감정보() 건(' . . . 기준)
 - ④(피해규모·영향·중) ▲국내 정보주체의 건(' . . . 기준)이 수집되었고, ▲암호화 등 생체인식정보(민감정보) 처리시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다고 하나, ▲ 에 대한 열람·삭제 등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가 상당부분 제한됨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²¹)」제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공표명령 요건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이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일부 시정한 점, ▲위반행위의 결과제거를 위해 노력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특히 ▲외형상 별도 동의절차가 존재하였으며, 현재는 법정 고지사항을 모두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표명령은 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은 사실 >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7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²¹⁾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나. 과징금 산정 기준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 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 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관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유출등과 안전성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 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은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3항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제2호)"에는 영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피심인이 를 현금화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3항제2조에 따라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고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달러)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①전체 매출액			
②관련 없는 매출액			
①에서 ②를 제외한 매출액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워으로 한다.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에 따른 기준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1차 조정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경하지 않는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7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2)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 내역>

①기준금액	②1차 조정	③2차 조정	④최종과징금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정액과징금)	•해당 없음	•조사협력으로 30% 감경 (원)	
•위반점수 1.7 적용 (보통 위반*)	※ 국외이전 공개('24.3.22.)		원**
⇒ 원	⇒ 원	⇒ 원	

- * ①(고의·과실:중) ▲개인정보를 국외에 단순 보관(처리위탁)하였다고 하나,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기본적인 규제를 검토·준수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음
 - ②(부당성:하) ▲서비스 특성상 이전 필요 측면이 있는 점, ▲처리위탁·보관에 관한 이전인 점 고려
 - ③(개인정보 유형:상) ▲민감정보() 건
 - ④(피해규모·영향:하) ▲국내 정보주체의 건(' . . . 기준)이 국외로 이전되었으나, ▲별도 이용 행위 없이 국외 서버에 단순 보관
-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Ⅵ.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1항 및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7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과징금, 시정조치 명령,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9월 25일

위 원 장	고 학 수	(서 명)